

대전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3가단21945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현

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섭

변론 종결2024. 9. 10.

판결 선고2024. 11. 12.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2. 22.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2022. 12. 22. 접수 제10331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2022. 10. 31. 보증원금 100,000,000원, 보증기한 2024. 11. 8.로 하는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C은행 인동지점에 보증번호 D, 보증금액 100,000,000원, 보증기한 2024. 11. 8.까지로 하는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이후 신용보증 조건변경으로 인하여 보증기한이 2024. 11. 4.로 변경되었다.

나. B는 위 보증서에 기하여 2022. 11. 4. C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로 대출을 받았으나 2023. 1. 11.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켜 C은행으로부터의 대위변제 요구에 따라 원고는 2023. 4. 18. 101,111,53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후 1,436,980원을 회수하여 현재 대위변제금 잔액으로 99,674,559원이 남아 있으며, 확정손해금 1,775원과 이 사건 보증약정서 제10조에 따라 법적절차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대지급금 1,971,610원이 발생하여 B에 대하여 101,647,944원(= 대위변제금 잔액 99,674,559원 + 확정손해금 1,775원 + 대지급금 1,971,610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그런데 B는 위와 같은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20여 일 전인 2022. 12. 2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2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0331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에 관한 신용보증사고가 비록 2023. 1. 11.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이자연체 등으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채무자 B의 무자력

갑 제9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당시 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B의 적극재산은 4,519,150,300원인데 반하여 소극재산은 E조합, F에 대한 채무 등 합계 5,281,091,123원 상당으로 B는 이 사건 근저당설정행위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사해행위 성립

피고가 가사 B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이전에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있는 채무자와 사이에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한 사람인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라. 원상회복의무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2022. 12. 22. 접수 제10331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성호

별지